

「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2. 개정 이유

- 구입용도 보증자리론의 전입유지 특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 가. 채무자의 특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처리 근거 마련
-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담보주택 전입유지 특약 위반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국제금융로 40, BIFC 13층(유동화자산부)
- 담당자(이메일) : 권일준(kij77n@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73
- 팩스번호 : 0505-036-0393

붙임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안 전후 대비표

[붙임]

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안 전후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절 연체관리 제30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유동화 자산의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유동화자산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 1.~5. (생 략) <u><신 설></u>	제6절 연체관리 제30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유동화 자산의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유동화자산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 1.~5. (현행과 같음) <u>6. 일정기간 담보주택에 전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자가 그 전입유지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때</u> ② (현행과 같음)	·구입용도 보증자리론 특약 반영
제31조(기한의 이익 부활)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1조(기한의 이익 부활)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제30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유동화자산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부활 관련 사항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전입유지 위반자에 대한 업무 절차 신설
제8절 기타관리 <u><신 설></u>	제8절 기타관리 <u>제55조의2(보증자리론 담보주택 전입 사후관리) 담보주택에 전입 후 일정기간 전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취급한 보증자리론의 사후관리에 관한 운용사항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전입유지 확인 업무를 추가하고 세부사항 하부 위임